

내부통제기준

제정 2008.07.28.

개정 2014.11.10.

개정 2015.10.28.

개정 2016.10.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회사와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7)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 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그러나 감사가 수행하는 내부감사업무 등 관계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부통제”라 함은 법령 등을 준수하고 회사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 및 관련절차를 말한다.
2.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법령, 감독규정, 내규 및 업무절차 등을 통칭하여 말한다.
3. “내부통제체계”라 함은 내부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 내 각 부분에서의 리스크 소재와 규모 및 준수해야 할 법령과 규정을 특정하고 이를 조직 및 업무분장 상에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준법감시(Compliance)체계,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체계 등을 통칭하여 말한다.
4. “준법감시업무”란 회사 전반에 있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동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시, 점검, 조사하는 등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준법감시인”이라 함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동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 등에 보고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법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8. “전담중개업자”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로서 법 제6조 제9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판매회사”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를 말한다.
10. “관계회사”란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해외보관대리인 등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

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10.27)

제 4 조 (세부지침 등의 제정 및 관리) ①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이 변경될 경우 관련내용을 신속·적절하게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등(개정 2016.10.27)

제6조 (내부통제체제 구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운영측면: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2. 회계정보측면: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완전성 및 적시성
3. 법규준수측면: 관계법령, 감독규정 및 내규의 준수

제7조 (이사회) 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제7조의2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1.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2.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4.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조의3 (준법감시인)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조의4 (임직원)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8조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①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는 제외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자구조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고객, 주주 및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험의 관리) ① 회사는 자산운영 및 기타 업무수행에 따른 위험을 계량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인식·평가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복수관리 및 대사의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새로 발생하거나 기존의 통제되지 않는 위험에 대하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관리체계의 적정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위험관리는 모든 업무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 시 부서별 리스크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임직원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가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부당히 이용 또는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비밀유지 등 의무) ① 회사의 고유정보 및 고객과 관련하여 비밀을 요하는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따라 유지되어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그 기록형태 및 기록유무를 불문하며, 임직원은 자기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타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밀정보를 관리, 사용하는 임직원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은 경우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 및 의사소통) ① 회사는 경영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관련된 재무 및 경영정보 등이 모든 임직원에게 전달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공유에 관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된 임직원은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④ “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6.10.27)

1.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 자본시장법 제176조의 시세조종행위
3.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
4.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15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자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 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는 정보이용 교란행위 및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중요정보”란 법 제1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④ 제1항의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3 (시세관여 교란행위의 금지) ①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②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 사용 전에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로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매주문 기법의 포함 여부 등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 사용자의 임의변경,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시세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⑧ 회사는 투자자가 별도로 구입한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16조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는 준법감시인이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통제범위, 통제정도 및 통제주기를 설정하여 점검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준법감시인이 정한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법규위반사실 은폐금지) 임직원이 자기 또는 다른 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법규위반 사실을 안 경우에는 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처리) ①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측면에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임직원이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②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분은 회사의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준법감시인

제19조 (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준법감시인은 금융관련 법규 및 회사실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관계법령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0.27.)

②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7)

③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해임되지 아니한다.(항목변경 2016.10.27)

1. 사망 시
2. 형사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3.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4. 파산선고 시
5. 기타 준법감시인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기에 부적절한 때

④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6.10.27)

제20조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 2의2. 제75조에서 규정한 정보통신수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3.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4.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5.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6.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료나 정보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27)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0.27)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7)

제 4 장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제22조 (준법감시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관계법령 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 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폐제,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 시 관계법령 등의 준수 여부 사전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게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3조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 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⑤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 (임직원에게 대한 지원 및 자문) 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준법감시업무의 위임)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26조 (윤리강령 및 준법서약서) ①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키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임직원윤리강령을 제정 및 시행하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별표시식

제1호]

- ②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 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 (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의2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①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②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조항신설 2016.10.27)

제28조(내부고발제도)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0.27)

-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0.27)
-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 ④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0.27)

제29조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 (명령휴가제도)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6.10.27)

제29조의3 (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①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5장 리스크관리체제의 운영 (삭제 2016.10.27)

「위험관리기준」으로 해당 장을 이관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기준) ①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영업행위 및 자산운용시 준수사항

제34조 (영업의 일반원칙) 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2.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3.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4.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5.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35조 (불합리한 차별행위 금지) ① 회사는 고객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에 대한 투자자정보 확인 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
2. 투자계약체결 및 유지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
3. 투자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법규 및 행정지도에 따른 경우
2. 금융상품의 특성상 특정 고객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일정한 집단에 속하는 고객들을 차별하고, 그 차별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4.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고객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5. 기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차별행위가 정당한 경우

제36조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① 회사(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객으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고객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② 회사(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나. 투자일임재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99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본조개정 2016.10.27)

제37조 (집합투자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본조개정 2016.10.27)

제38조 (투자설명 방법·절차) ① 임직원은 투자설명을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57조와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

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고객계좌관리 및 매매주문 처리 등

제39조 (고객계좌 관리·감독) ① 임직원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7)

1.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고객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고객에게 권유 및 계약 시 그 내용의 타당성
4. 고객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② 회사는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 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 (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임직원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운용하는 계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직원은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고객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의 투자일임계약 계좌에 대한 매매는 홈트레이딩시스템(이하 “HTS”라 한다)을 통한 직접거래를 수반해서는 안 되며 매매중개인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3호에 따라 거래를 처리한 임직원은 접수시킨 매매주문 내용이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처리상황 및 처리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매매중개회사 선정 기준) ① 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고객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27)

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27)

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0.27)

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7)

제42조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8장 의결권 대리행사

제43조 (의결권 대리행사) ① 회사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③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7)

④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7)

제9장 이해상충의 관리 및 정보차단벽

제1절 일반원칙

제44조 (고객이익 우선)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제45조 (이해상충의 관리) ① 회사와 임직원은 고객을 대리하여 또는 고객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다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이하 “이해상충”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관련법규의 준수여부 및 이해상충방지 등의 효율적인 점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을 제한하는 거래제한목록과 주의거래목록의 지정 및 기록·유지

③ 회사는 자산운용규정에 이해상충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신설 2016.10.27)

제46조 (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할 때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회사나 고객을 상대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7조 (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차단벽

- 제47조의2 (정보차단벽)** ① 정보차단벽(CHINESE WALL) 이라 함은 회사의 주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 ②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용방법 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정보차단벽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준칙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제47조의3 (정보교류의 차단) ①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용방법 등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47조의6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가.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2.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게

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③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47조의6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가.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라.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3.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법시행령 제51조제4항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동일 사업본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3절 정보접근 권한 및 정보차단벽의 통과

제47조의4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①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안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항신설 2016.10.27)

제47조의5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①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②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47조의6(한정통과) ① 제47조의3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회사는 특정 정보차단벽 내 또는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보차단벽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허용할 것.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승인받은 임직원은 당해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4.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② 제47조의3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정보 제공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하되,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47조의7(통과 승인 해제) 정보차단벽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정보가 공개되는 등 더 이상 정보차단벽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비밀정보의 관리책임자는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준법감시인은 통과 승인 해제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와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47조의8(간주통과) ①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우연하게 비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하 “간주통과자”라 한다)은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간주통과자는 습득한 비밀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47조의9(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 ① 법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및 법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한 자가 회의에 관하여 기록(이하 “회의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의명

2. 각 회의참석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3. 회의일시, 회의시간 및 회의장소
 4. 회의목적
 5. 회의의 주요내용. 다만, 이 경우 회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통신을 한 자가 통신에 관하여 기록(이하 “통신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신내용을 전부 녹음하거나 전자적 방법 기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모두 저장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각 통신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2. 통신일시 및 통신방법
 3. 통신목적
 4. 통신의 주요내용
- ④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통신에 대하여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⑤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조항신설 2016.10.27)

제4절 거래제한목록 등의 작성 및 관리

- 제47조의10 (거래제한 대상목록)** ①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의 권유(조사분석자료의 공표를 포함한다), 회사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이하 이 절에서 “매매거래등”이라 한다)을 제한하는 대상목록으로 지정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자산운용규정에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 (조항신설 2016.10.27)

- 제47조의11 (거래주의 대상목록)**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2.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제47조의10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4. 회사가 제47조의10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5. 기타 매매거래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권유 시 그 이해관계를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고지함으로써 계약위반 또는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16.10.27)

제47조의12(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① 제47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제47조의11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임직원은 매매거래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5절 정보차단벽의 유지 및 관리

제47조13 (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① 준법감시인은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거래제한목록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복귀 :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정보의 내용 등

2. 거래제한목록 및 거래주의목록의 유지·관리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②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기록·유지, 정보차단벽 통과 및 승인,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목록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관련한 기록·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10장 비밀정보의 유지·관리

제48조 (비밀정보의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3.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제49조 (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2.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5.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0.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1.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되어야 한다.

제50조 (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51조 (기본원칙)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10.27)
- ③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기재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7)

제52조 (계좌개설 및 신고) ①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 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이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에서 개설한 계좌로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서 개설한 증권사가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5.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하는 경우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7.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③ 임직원은 지분증권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 ④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⑥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6.10.27)

제53조 (매매내역 및 잔고내역의 보고) ① 회사의 임직원은 매월 회사에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제5항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지분증권 등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매명세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의하여 통지된 사항이 회사의 운용자산과 관계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장 고유재산운용업무

제54조 (기본운용정책) ① 회사는 고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과 이해상충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미리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고객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가능성을 낮춘 후 매매 및 거래를 하여야 한다. 만일 낮추기 곤란한 경우는 매매 및 그 밖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③ 회사는 고유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한도 등을 규정한 고유자산 운용규정을 제정 및 관리해야 한다.

제55조 (정보교류의 차단) ① 회사가 고유재산을 직접 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재산과 회사의 고유재산 간에 운용정보가 차단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 등을 분리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고유재산운용 업무를 하는 자는 고객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제56조 (거래기록의 확인 및 관리) ① 회사는 고유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고객과의 이해상충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 후 문서로서 보관해야 한다.

②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고유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문서와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확인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장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57조 (개인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① 회사는 개인정보 관리·보호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관리방침을 제정하고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 고객이 회사의 관리정책을 항상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 (개인정보 관리보호 담당자의 지정 및 운영) 회사는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의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보호지침」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제·개정 총괄
2. 고객정보의 관리 및 보호 관련 민원 등의 이행 상황 감독
3. 고객 피해 구제 및 관련 내부시스템 점검
5. 개인정보 유출 시의 고객통보 및 관련기관 보고
6. 내부직원 교육 및 훈련 등

제14장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제59조(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의 수립)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제60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운영) 회사는 신용정보 관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1.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61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남용 방지) ①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2조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회사는 개인정보 이용자의 식별 및 인증, 개인정보 접근권한 관리 및 제어, 개인정보 누출·파손방지 대책, 정보시스템의 가동상황 기록, 전산시스템의 적정성 분석 및 감사 등 기술적·물리적 안전관리 대책을 별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장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 구축 및 운영

제63조 (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①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 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

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이행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64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①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65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제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66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①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등과 관련된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③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④ 회사가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⑤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제67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① 회사는 제63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자료를 보

존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63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의한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제68조 (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장 민원 및 분쟁 처리

제69조 (고충처리 정책) 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70조 (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①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 (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①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에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장 전산시스템

제71조의2 (전산시스템 정책) ① 회사의 IT담당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전산장비의 사용·

관리 및 기록 유지에 대한 기준과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산장비를 이용한 불법적인 자료 유출 및 루머(Rumor)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영업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중요한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보안대책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한다.

제72조 (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① 회사의 전산설비는 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② IT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2.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3. 전산처리시스템 용량의 적정성
4.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제73조 (보안관리) ①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2.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3.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4. 복구방안, 비상계획의 유무 및 실효성
5. 복구전담팀의 운영여부
6.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②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 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 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74조 (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①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장 정보제공 및 전자통신수단 사용

제74조의2 (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조항신설 2016.10.27)

제74조의3 (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 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74조의2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조항신설 2016.10.27)

제75조 (정보통신수단의 지정) ① 회사는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우편 및 메신저 등의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을 종류별로 지정하여 사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 메신저 등 업무용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또는 금지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76조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① 회사는 임직원의 사용한 전산자료의 열람 및 외부제공 등에 관한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전산자료를 열람 및 대외제공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공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절차 등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77조 (집합투자계약의 작성) 회사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8조 (전담중개업자의 선정 등) ① 회사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함에 있어 전담중개업자와 서비스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의 전담중개업자를 둘 수 있다.

② 회사는 전담중개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선정기준을 정한다.

1.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전담중개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
2. 전담중개업자의 신용등급 등 재무상황을 포함한 재무건전성
3. 정확하고 신속한 매매체결, 보고, 결제 능력

4.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에 부합하는 자금조달능력
5. 증권대차, 증거금, 자금차입 거래조건의 적정성
6.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가능성
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를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담보의 안전한 회수 가능성
8. 그 밖에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설비의 구비 여부

제79조 (전담중개업자계약의 내용) 회사는 전담중개업자와 전담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전담중개업자와 관련된 전담중개업자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간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전담중개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제3자에 대한 담보, 대여, 환매조건부매매 등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에 관한 사항
3. 전담중개업자가 제2호에 따라 이용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
4. 전담중개업자 제공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에 비용 등에 관한 사항
5. 계약 종료의 사유 및 절차, 계약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제80조 (부당한 투자권유 금지) 회사에서 운용 중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도록 판매회사의 행위를 규제하여야 한다.

1.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2. 적격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된 자료를 적격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시점,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산정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 이외의 자료를 토대로 한 수익률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
4.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를 특정하여 알리는 행위
5.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 이외의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제81조 (투자위험 등의 설명) ① 회사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를 위한 투자제안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적인 투자위험과 함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유한 투자위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위험허용수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등 투자자가 인지하는 절차를 거친 후 변경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의 내용을 일반투자자(법 제249조의2 제2호에 따른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경우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08.7.28)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 수행자 등은 이 기준에 의

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1.10)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1월 10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5.10.28)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18장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등록인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27)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10월 27일 개정하여 시행한다.

